■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td>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4조 <생략>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생략>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td><td>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4조 <좌동>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좌동>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td><td>

개정일 명시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주체 다양화로 인한 문구 정정

</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td>
<table>
<tr><td>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td><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tr>
<tr><td>자활기업</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tr>
<tr><td>사회복지법인</td><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td></tr>
<tr><td>보육시설</td><td>「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td></tr>
</table>
② <생략>
제4조 <생략>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td><td>
<table>
<tr><td>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td><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tr>
<tr><td>자활기업</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tr>
<tr><td>사회복지법인</td><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td></tr>
<tr><td>보육시설</td><td>「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td></tr>
</table>
② <좌동>
제4조 <좌동>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td><td>사회복지시설 문구 단순화(조문인용으로 변경) 및 수수료 할인기관 추가</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생략>	<좌동>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td>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생략>

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td><td>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동>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좌동>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좌동>

8.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td><td>

개정일 명시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주체 다양화로 인한 문구 정정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문구 단순화(조문인용으로 변경) 및 수수료 할인기관 추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8. <생략>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 판단기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삭제> **제2조 <좌동>**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8. <좌동>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 판단기준	개정일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주체 다양화로 인한 문구 정정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문구 단순화(조문인용으로 변경) 및 수수료 할인기관 추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생략> **제4조 <생략>**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② <좌동> **제4조 <좌동>** **[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생략> 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삭제> **제2조 <좌동>**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좌동>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좌동> 7.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	개정일 명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
<td>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table>
<tr><th>대상</th><th>판단기준</th></tr>
<tr><td>(예비) 사회적 기업</td><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tr>
<tr><td>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td><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tr>
<tr><td>자활기업</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tr>
<tr><td>사회복지법인</td><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td></tr>
</table>
</td>
<td>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table>
<tr><th>대상</th><th>판단기준</th></tr>
<tr><td>(예비) 사회적 기업</td><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td></tr>
<tr><td>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td><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tr>
<tr><td>자활기업</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tr>
<tr><td>사회복지법인</td><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td></tr>
</table>
</td>
<td>예비사회적기업 승인주체 다양화로 인한 문구 정정

사회복지시설 문구 단순화(조문인용으로 변경) 및 수수료 할인기관 추가</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
<td>
<table>
<tr><td></td><td>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td></tr>
<tr><td>보육시설</td><td>「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td></tr>
</table>
</td>
<td>
<table>
<tr><td></td><td></td></tr>
<tr><td>보육시설</td><td>「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td></tr>
</table>
</td>
<td></td>
</tr>
</table>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
<td>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3조 <생략>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생략>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table>
<tr><th>대상</th><th>판단기준</th></tr>
<tr><td>(예비) 사회적 기업</td><td>「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td></tr>
<tr><td></td><td></td></tr>
</table>
</td>
<td>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3조 <좌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9. <좌동>
10.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table>
<tr><th>대상</th><th>판단기준</th></tr>
<tr><td>(예비) 사회적 기업</td><td>「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td></tr>
</table>
</td>
<td>개정일 명시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주체 다양화로 인한 문구 정정</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td>
<table>
<tr><td>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td><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tr>
<tr><td>자활기업</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tr>
<tr><td>사회복지법인</td><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td></tr>
<tr><td>보육시설</td><td>「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td></tr>
</table>
제4~5조 <생략>
</td><td>
<table>
<tr><td>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td><td>「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마을기업</td><td>「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td></tr>
<tr><td>자활기업</td><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td></tr>
<tr><td>사회복지법인</td><td>「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td></tr>
<tr><td>사회복지시설</td><td>「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td></tr>
<tr><td>보육시설</td><td>「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td></tr>
</table>
제4~5조 <좌동>
</td><td>사회복지시설 문구 단순화(조문인용으로 변경) 및 수수료 할인기관 추가</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별지2]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교육위탁계약** **<좌동>**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략>**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생략>**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8. <생략>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좌동>** **제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8. <좌동> 9. 아래 표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업 및 단체 중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3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상	판단기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증을 받은 (예비) 사회적기업 | 	개정일 명시 예비사회적기업 승인주체 다양화로 인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에 협동조합임을 확인가능할 것)	한 문구 정정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방자지단체와 약정 체결 완료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명칭에 사회복지법인임을 확인가능할 것)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문구 단순화(조문인용으로 변경) 및 수수료 할인기관 추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유치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명시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신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9호로 변경된 계약내용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운용관리수수료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연금수령개시자의 경우 경과조치 예외적용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8. <생략> 9. 가입자가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연금 최초수령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일시금 지급에 한함),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8. <좌동> 9. 가입자가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일시금 지급에 한함),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인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시 수수료 할인율 적용되었던 것을 전액 징수하지 않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td>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인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table><tr><th>경과년수</th><th>할인율</th></tr><tr><td>10년 이하</td><td>50%</td></tr><tr><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70%</td></tr><tr><td>20년 초과</td><td>80%</td></tr></table>
10. <신설>

② <좌동>
제4~5조 <좌동></td><td><표 삭제>

10. 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좌동>
제4~5조 <좌동></td><td>장애인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율 적용</td></tr>
</table>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3년 3월 31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td>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td><td>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td><td>개정일 명시</td></tr>
<tr><td>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신설></td><td>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제9호로 변경된 계약내용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자산관리수수료에 즉시 변경된</td><td>연금수령개시자의 경우 경과조치 예외</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사유</th></tr>
<tr><td></td><td>내용을 적용합니다.</td><td>적용</td></tr>
<tr><td>[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td><td>[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td><td></td></tr>
<tr><td>제1조~제2조 <생략></td><td>제1조~제2조 <좌동></td><td></td></tr>
<tr><td>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8. <생략>
9.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신탁금이 1회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연금 최초지급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일시금지급,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로 인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table><tr><th>경과년수</th><th>할인율</th></tr><tr><td>10년 이하</td><td>50%</td></tr><tr><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70%</td></tr><tr><td>20년 초과</td><td>80%</td></tr></table>
10. <신설>
③ <좌동></td><td>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8. <좌동>
9.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신탁금이 1회 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제2호에 따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일시금 지급에 한함),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으로 인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 삭제>

10. 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제4호에 의한 계약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③ <좌동></td><td>연금수령시 수수료 할인율 적용되었던 것을 전액 징수하지 않음

장애인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율 적용</td></tr>
</table>